

#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 연기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

## 1. 개정사유

- 국토교통부 고시 「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 (제2017-281호, 2017. 5. 2. )개정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대상에 최초교육을 포함하고, 교육훈련 연기사유와 제출서류 등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훈련 연기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

## 2. 주요 개정내용

- 교육·훈련의 연기대상 확대
  - 설계·시공 등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유예된 건설기술자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연기가 가능하도록 연기대상에 포함
- 교육·훈련의 연기사유 조정
  -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, 연기사유에 “교육 인프라 부족” 추가 등

#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 연기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

개정 2017. 5. 04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및 「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(이하 “교육·훈련 기준 고시”라 함) 제7조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·훈련을 연기하는 경우의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대상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함) 별표 3 제2호 가목3)에 따라 설계·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영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·훈련(특급기술자 계속교육)
2. 영 별표 3 제2호 나목3)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교육·훈련(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)
3. 영 별표 3 제2호 나목4)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교육·훈련(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)
4. 영 별표 3 제2호 다목3)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교육·훈련(품질관리 계속교육)

5. 영 별표 3 제2호 가목1) 및 다목1)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영(시행 2014.5.23.) 부칙 제10조제2항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(시행 2015.6.30.) 부칙 제 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유예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(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)

제3조(연기사유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질병, 입대, 해외출장 및 연수,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이외에 경력관리 수탁기관(한국건설기술인협회)에서 인정하는 피교육자가 교육·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출산 및 육아
2. 결혼
3.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
4. 교육 인프라 부족
5. 기타

제4조(제출서류 등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·훈련 연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연기사유 해당기간 및 연기횟수 등은 [별표 1]과 같다.

#### 부칙

이 기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적용대상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</p> <p>1~4.(생략)</p> <p><u>5. 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</p> <p>1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영 별표 3 제2호 가목1) 및 다목1)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영(시행 2014.5.23.) 부칙 제10조제2항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(시행 2015.6.30.)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유예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(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)</u></p>
<p>제3조(연기사유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-----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</p> <p>1. 출산 및 육아</p> <p>2. 결혼</p> <p><u>3. 1개월 이내에 소속직원이 2명 이상 교육시기 집중(삭제)</u></p> <p><u>4. 야간대학 재학(삭제)</u></p> <p><u>5.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</u></p> <p><u>6. 기타</u></p>	<p>제3조(연기사유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-----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</p> <p>1. 출산 및 육아</p> <p>2. 결혼</p> <p><u>3.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</u></p> <p><u>4. 교육 인프라 부족</u></p> <p><u>5. 기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제출서류 등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·훈련 연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<u>연기가능기간</u> 및 연기횟수 등은 [별표 1]과 같다.</p>	<p>제4조(제출서류 등) 교육·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·훈련 연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<u>연기사유 해당기간</u> 및 연기횟수 등은 [별표 1]과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 기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[별표 1]

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 · 횟수

구분	연기사유	제출서류	연기사유 해당기간	비고
건설기술자	질병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진단서 또는 산재관련서류  ※ 산재관련서류 -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·보험급여결정통지서 -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- 요양연기·기타신청서(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료소견 내용포함)	- 진단서 · 치료기간이 표기된 경우 : 치료기간까지 · 치료기간이 없는 경우 : 장기치료 및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므로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 - 산재 : 첨부서류의 기간까지	사유 발생시 마다 ※ 당뇨병, 고혈압 등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동일질병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3회까지만 인정
	입대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입영확인서류 -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병적증명서) - 산업/전문요원복무확인서(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)	- 복무기간	
	해외출장 및 연수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출·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 서류 - 해외출장 :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출·입국사실증명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또는 여권 등 - 연수 : 입학허가서 등(한국어 번역공증 첨부) * 업체신고시 : 공문, 신청서, 명단, 해외출장 및 연수 증빙서류(해외출장 : 인사명령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, 연수 : 입학허가서 / 한국어 번역공증 첨부)	-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- 해당기간 만료일을 알 수 없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6개월	사유 발생시 마다
	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<교정기관(교도소), 구치 감호소 등>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입증서류	- 해당기간 만료일까지	사유 발생시 마다

구분	연기사유	제출서류	연기사유 해당기간	비고
건설기술자	출산 및 육아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입증서류 - 출산 :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(출산예정일 포함)등 - 육아관련 : 육아휴직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)	- 출산 : 출산예정일까지 - 육아관련 : 휴직기간까지 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제 19조 근거)	사유 발생시 마다
	결혼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청첩장	결혼일로부터 7일	사유 발생시 마다
	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	1.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. 사망진단서	사망일로부터 2개월	<u>사유 발생시 마다</u>
	<u>교육 인프라 부족</u>	<u>1. 국토교통부의 지침문서 또는 협의 결과 문서</u>	<u>국토교통부의 지침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함</u>	